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7. 16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황국주 의원 등 10명
- 발의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상정 및 의결: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7. 16.)

2. 개정이유

-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친화도시 홍보물품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12조 제2항)
- 나.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15조)
- 다. 위촉직 위원 임기를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(안 제16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
- 「공직선거법」 제112조
- 「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」

○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5. 7. 4. ~ 2025. 7. 14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,
- 주요 개정사항은, 안 제12조(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)에 교육·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·배포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,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규정 중 안 제15조(구성 등)에서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 안 제16조(임기)에서 ‘한 차례만 연임’을 ‘두 차례까지 연임’으로 개정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및 『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』에 따라 아동의 생존·보호·발달·참여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종사자”를 “부서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자”를 “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교육(지원)청 담당자”를 “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2조(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)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2조(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의 권리를 알리기 위한 행사, 캠페인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</u></p>	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5조(구성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<u>구의원 및 다양한 계층·지역 또는 아동정책·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</u> 구청장이 위촉하고,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.</p>	<p>제15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하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15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<p><신 설></p>	<p>1. <u>달서구의회 의원</u></p>	<p>1. 2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<신 설></p>	<p>2. <u>아동복지 분야 전문가</u></p>	
<p><신 설></p>	<p>3. <u>아동관련 기관·단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</u></p>	<p>3. ----- ----- 부 서장</p>
<p><신 설></p>	<p>4. <u>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자</u></p>	<p>4. <u>경찰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
<p><신 설></p>	<p>5. <u>교육(지원)청 담당자</u></p>	<p>5. <u>대구광역시 남부 교육지원청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</u></p>
<p><신 설></p>	<p>6. <u>기타 아동 정책 또는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</u></p>	<p>6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·④ (생략)</p>	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③·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6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<u>한 차례만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6조(임기) ① ----- ----- -- 두 차례까지 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제16조(임기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